

# 장애학생지원 규정

개정 2019.05.22. 개정 2020.04.28. 개정 2022.03.17. 개정 2024.03.01.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「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」 제14조 및 「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」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·학습 환경을 제공하고,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장애”라 함은 교수·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.
- ② “장애학생”이라 함은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(장애인 등록증 소지자)된 장애학생 모두를 말한다.
- ③ “교육복지”라 함은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.

### 제3조 (적용)

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.

### 제4조 (수강신청) <본조 개정 2022.03.17.>

장애학생 유형별 수강신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학사관리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.

### 제5조 (장학금지급)

장애학생에게는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.

### 제6조 (장애이해 프로그램)

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으로 비 장애학생과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강 및 장애체험 등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한다.

### 제7조 (도우미제도 운영) <본조 개정 2022.03.17.>

- ①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.

1. 학습보조 도우미
2. 이동보조 도우미

## 제2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

제8조 <삭제 2019.05.22.>

제9조(구성) <본조 신설 2022.03.17.>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간사는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으로 한다.

제10조(기능) <본조 신설 2022.03.17.>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
- ② 장애학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
- ③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
- ④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⑤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
- ⑥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- ⑦ 기타 장애학생 관련 규정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11조(회의) <본조 신설 2022.03.17.>

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 <삭제 2019.05.22.>

## 제3장 장애학생지원센터

제13조 (설치) <개정 2022.03.17.>

본 대학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이 될 때 장애학생지원 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14조(업무) <본조 개정 2022.03.17.>

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
- ② 장애학생 교수·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
- ③ 장애학생 시설·설비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④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
- ⑤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- ⑥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5조 (구성)

- ① 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며, 센터장은 학생처장이 겸직 한다.  
<개정 2022.03.17., 2024.03.01.>
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센터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원은 학생팀 담당직원으로 한다.<개정 2020.04.28., 2022.03.17.>

제16조 <삭제 2022.03.17.>

제17조(운영세칙) <본조 개정 2022.03.17.>

센터의 운영에 관한 운영세칙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8조 (준용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및동법시행령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5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4.2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3.0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